

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30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24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3월 29일, 이성배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9년 4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성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할 바 있음.

- 이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 해임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회원 해임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9조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조표 참조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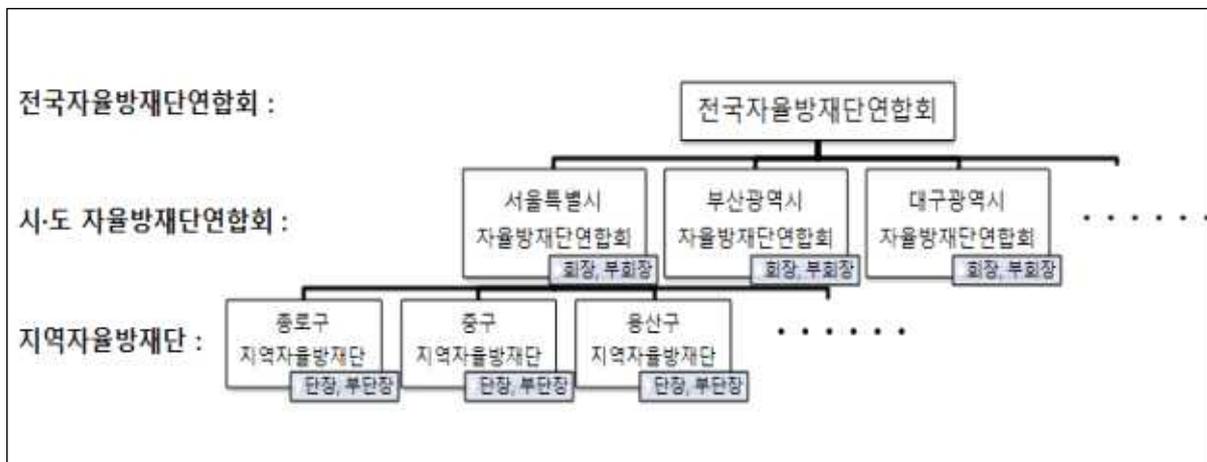
- 본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원의 해임사유 중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회원의 해임) (생략) 1. 회원이 <u>심신장애로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.~3. (생략)	제9조(회원의 해임) (현행과 같음) 1. ———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</u> ——— 2.~3. (현행과 같음)

■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현황

- 자율방재단연합회 체계를 살펴보면 ‘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’ 하위에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에 해당하는 ‘시·도 자율방재단연합회’가 있고, 그 하위에 자치구 차원의 ‘지역자율방재단’이 위치하고 있음.



[그림]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체계

- ‘지역자율방재단’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‘법’) 제66조1)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구성·운영되며,
- ‘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’는 법 제66조의22)에 따라 ‘지역자율방재단’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담당하고, ‘시·도 자율방재단연합회’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53)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구성됨.
- 이 때 ‘지역자율방재단’의 단장 및 부단장은 ‘시·도 자율방재단연합회’의 회원이 되며, ‘시·도 자율방재단연합회’의 회장 및 부회장은 ‘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’의 회원이 됨.
- 한편,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25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된 총 50명의 회원과 회장, 부회장, 감사(2명), 사무총장의 임원으로 이루어져 있음.

-
- 1) **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2) **제66조의2(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)**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 - 3) **제27조의5(전국연합회의 구성)**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별로 해당 시·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(이하 "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"라 한다)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. 이 경우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·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②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서울시 자율방재단 현황

○ 설치 근거

- 「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등
 - ▶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서 시·도 조례로 위임

○ 설치일자 : 2013.1.1. ※ 2기 출범 : '16.7.15~'19.7.14

○ 구성 및 기능

- 구성인원 : 50명 (25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부단장)
- 임원현황 : 회장, 부회장, 감사(2명), 사무총장

직위	성명	소속
회장	김○○	강남구 자율방재단장
부회장	심○○	구로구 자율방재단장
감사	유○○	도봉구 자율방재단원
감사	이○○	광진구 자율방재단장
사무총장	라○○	강남구 자율방재단원

- 주요기능

- ▶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- ▶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■ '장애'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(안 제9조제1호)

- 안 제9조제1호는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원인 자치구 자율방재단 단장 또는 부단장의 해임사유 중 “심신장애” 관련 표현을 차별소지가 없는 새로운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으로,
- 현행의 경우 “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를 회원의 해임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어떠한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회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할 경우 장애인 차별 소지를 담고 있

기 때문에 이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- 이와 관련하여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“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”라고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,
- 또한, 동일한 취지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4) 중 “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”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을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”라고 수정하여 개정(16.2.3.)된 바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- 다만, 서울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자체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만일의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

질의) 개정안에 따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이라하면 얼마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?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?(성흠제 위원)

답변)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각 자치구 자율방재단의 자율에 맡겨 판단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

4) 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

검토하겠음.(김학진 안전총괄실장)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이성배, 권수정, 여 명, 임종국,
김화숙, 김소양, 유 용, 권영희,
김제리, 이상훈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할 바 있음.
- 이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 해임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회원 해임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9조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조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호의 “심신장애로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회원의 해임) (생략)</p> <p>1. 회원이 <u>심신장애</u>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2.~3. (생략)</p>	<p>제9조(회원의 해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회원이 <u>장기간의 심신쇠약</u>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